

2022년 유원시설 무허가·무신고 및 법령 위반 업체 자진신고 기간 운영

'22. 1. 18.(화)/부산 수영구 문화관광과

□ 추진배경

-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찰결과*(행안부 주관), 사업자의 무지, 자치단체의 지도·감독 소홀 등으로 안전성검사 및 허가·신고 없이 유원시설업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 다수 발생

* 감찰 대상 23개 자치단체 총 862개 유원시설업 중 221개소가 불법 업체(26% 차지)

□ 추진개요

- (기간) '22. 1. 3(월) ~ 2. 3(목), (1개월간)
- (대상) 관광진흥법에 따른 무허가·무신고 업체 및 안전규정 미 준수 등 법령 위반업체
 - (무허가·무신고 업체) 자진신고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·신고 후 영업 등 안내 및 제도 조치

< 무허가·무신고 업체 대상 >

- ① 영업신고가 가능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·신고 후 영업할 수 있도록 입지가 가능 여부, 구비서류 등 안내, 허가·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·홍보
- ②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안내하고 '자진신고'로 처리
 - '자진신고'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
 - * 폐업확인서 작성·제출하도록 조치 후 현장점검 기간 중 확인점검 실시
 - * 자진신고기간 내 간판 철거, 업소 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폐업안내 부착 등 조치 등
 - 폐쇄 후 재영업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82조·제84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고발 등 처리 조치

- (법령 위반 업체)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등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 준수 안내 및 제도 조치

< 허가·신고 업체 중 법령 위반 업체 대상 >

- ①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중인 업체가 자진신고 시 안전·위생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
 - * 다만 자진신고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면제, 기한 내 시정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